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0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한·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성준,
김영철, 김지향, 김형재,
남창진, 박승진, 박영한,
박칠성, 봉양순, 서준오,
유정인, 윤종복, 이상욱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
정준호, 홍국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제2항(사용료 등)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수입금의 예외적 용도로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음.
-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.(안 제 23조제5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하수도법 제65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조 제목을 “사용료”에서 “사용료 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제28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 공공하수도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사용료) 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3조(사용료 등) 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제28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 공공하수도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